

##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 안  
번 호

제출년월일 : '96. 1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## 1. 개정이유

-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급변하는 사회환경 변화와 다양한 주민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, 지방재정을 확충하여 주민복지증진하고,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등으로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구성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데 있음.

## 2. 주요골자

- 국민운동지원과 + 생활체육과 → 사회진흥과
  - 부과과 → 부과1과, 부과2과
  - 국·과 명칭변경 → 시민국(시민생활국), 민방위과(민방위재난관리과), 산업과(지역경제과), 환경과(환경관리과), 청소과(생활환경과), 하수과(치수과)
  - 계통폐합 및 신설 → 국제교류계, 재난관리계, 중소기업계, 세외수입계, 구정연구계, 노인복지계

### 3. 개정근거

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(대통령령 제 14647호)

#### 4. 개정안 : 따로붙임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10호

##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시민국”을 “시민생활국”으로 한다.

제6조 제1항 중 “국민운동지원과·생활체육과”를 “사회진흥과”로 하고, “민방위과”를 “민방위재난관리과”로 하며, 동조 제2항 제3호 중 “지방의회”를 삭제하고 동조 제2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,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## 4.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

제6조 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 5.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

제6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동조 제6항을 삭제하고, 동조 제7항을 제6항으로 한다.

## ④ 사회진흥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국민운동의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
2. 새마을 바르게살기운동 관련 조직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
3. 자연보호운동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4. 생활체육, 전전생활 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5. 생활체육, 전전생활 관련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
6. 체육시설업 신고 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

## ⑤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민방위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2. 전시운영계획 · 민방위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
3. 민방위대 설치 · 조직편성 · 동원에 관한 사항
4.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
5. 병사에 관한 사항
6.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
7. 안전 및 사고대책위원회 구성 · 운영 등에 관한 사항

제7조 제1항 중 “부과과”를 “부과1과 · 부과2과”로 하고, 동조 제3항 제4호를 삭제하며, 동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, 동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## ④ 부과1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취득세, 등록세, 농지세, 지역개발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
2. 재산세, 종합토지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
3. 목적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
4. 세무조사 및 과세표준액의 평가에 관한 사항

## ⑤ 부과2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자동차세, 도축세, 경주 · 마권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
2. 면허세, 주민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
3. 목적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
4. 세외수입 과정업무 분석평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

제8조의 제목 및 동조 제1항 중 “시민국”을 각각 “시민생활국”으로 하고, 동조 제1항 및 제5항 중 “산업과”를 각각 “지역경제과”로 하며, 동조 제1항 및 제6항 중 “환경과”를 각각 “환경관리과”로 하고, 동조 제1항 및 제7항 중 “청소과”를 각각 “생활환경과”로 하며, 동조 제2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## 5. 노인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

동조 제3항 제2호 중 “노인복지”를 삭제한다.

제10조 제1항 및 제4항 중 “하수과”를 각각 “치수과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
제2조(실. 국의 설치)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문화공보실·감사실·시민봉사실·총무국·재무국· <u>시민국</u> ·도시정비국 및 건설국을 둔다.	제2조(실. 국의 설치) ----- ----- ----- <u>시민생활국</u> -----
제6조(총무국) ① 총무국에 총무과, 기획예산과, <u>국민운동지원과</u> , 생활체육과, 민방위과 및 여권과를 둔다. ② (생 략) 1. (생 략) 2. (생 략) 3. <u>지방의회</u> ·동행정에 관한 사항 4. 기타 청내 다른 실.국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	제6조(총무국) ① 총무국에 총무과, 기획예산과, <u>사회진흥과</u> , 민방위재난관리과 및 여권과를 둔다. ②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3. 동행정에 관한 사항 4. <u>국제교류에 관한 사항</u> 5. 기타 청내 다른 실.국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
③ (생 략) 1~4 (생 략) <u>(신 설)</u>	③ (현행과 같음) 1~4 (현행과 같음) 5. <u>지방의회에 관한 사항</u>
④ <u>국민운동지원과</u> 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 1. 국민운동의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. 새마을 관련 조직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. 자연보호운동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	④ <u>사회진흥과</u> 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 1. <u>국민운동의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</u> 2. <u>새마을, 바르게살기운동 관련조직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</u> 3. <u>자연보호운동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</u>

현 행	개 정 (안)
4. 바르게 살기운동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	4. 생활체육, 건전생활 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5. 바르게살기협의회 조직·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	5. 생활체육, 건전생활 관련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
⑤ 생활체육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	6. 체육시설업 신고 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
1. 생활체육·건전생활진흥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	
2. 생활체육·건전생활관련시설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	
3. 체육시설업 신고·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	
⑥ 민방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	⑤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1. 민방위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	1. 민방위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2. 전시운영계획·민방위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	2. 전시운영계획·민방위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
3. 민방위대 설치·조직편성·동원에 관한 사항	3. 민방위대 설치·조직편성·동원에 관한 사항
4.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	4.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
5. 병사에 관한 사항	5. 병사에 관한 사항
⑦ (생 략)	6.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
제7조(재무국) ① 재무국에 재무과, 세무관리과, 부과과 및 지적과를 둔다.	7. 안전 및 사고대책위원회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사항
② (생 략)	⑥ (현행 제6조 제7항과 같음)
③ 세무관리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	제7조(재무국) ① 재무국에 재무과, 세무관리과, 부과1과, 부과2과 및 지적과를 둔다.
1~3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4. 세외수입 과장업무 분석평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	③ 세무관리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	1~3 (현행과 같음)
	(삭 제)

현 행	개 정 (안)
<p>④ <u>부과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취득세, 등록세, 자동차세, 농지세, 도축세, 경주·마권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2. <u>재산세, 종합토지세, 면허세 및 주민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3. <u>목적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4. <u>세무조사 및 과세표준액의 평가에 관한 사항</u></li> </ol> <p>⑤ (생 략)</p> <p>제8조(시민국) ① <u>시민국에 사회복지과, 가정복지과, 위생과, 산업과, 환경과 및 청소과를 둔다.</u></p> <p>② (생 략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~ 5. (생 략)</li> </ol> <p>③ (생 략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생 략)</li> <li>2. <u>노인복지·유아복지·가정의례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3. ~ 4. (생 략)</li> </ol> <p>④ (생 략)</p> <p>⑤ <u>산업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u></p> <p>1~7 (생 략)</p> <p>⑥ <u>환경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u></p> <p>1~5 (생 략)</p> <p>⑦ <u>청소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u></p> <p>1~6 (생 략)</p>	<p>④ <u>부과1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취득세, 등록세, 농지세, 지역개발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2. <u>재산세, 종합토지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3. <u>목적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4. <u>세무조사 및 과세표준액의 평가에 관한 사항</u></li> </ol> <p>⑤ <u>부과2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자동차세, 도축세, 경주·마권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2. <u>면허세, 주민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3. <u>목적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4. <u>세외수입 과정업무 분석평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</u></li> </ol> <p>⑥ (현행 제7조 제5항과 같음)</p> <p>제8조(시민생활국) ① <u>시민생활국에 사회복지과, 가정복지과, 위생과, 지역경제과, 환경관리과 및 생활환경과를 둔다.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~ 4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5. <u>노인복지업무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6. (현행 제8조 제2항 제5호와 같음)</li> </ol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2. <u>유아교육·가정의례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3. ~ 4. (현행과 같음)</li> </ol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<u>지역경제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u></p> <p>1~7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<u>환경관리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u></p> <p>1~5 (현행과 같음)</p> <p>⑦ <u>생활환경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u></p> <p>1~6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(안)
<p>제10조(건설국) ① 건설국에 건설관리과, 토목 과, <u>하수과</u> 및 공원녹지과를 둔다. ②~③(생 략) ④ <u>하수과</u>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 1~6(생 략) ⑤(생 략)</p>	<p>제10조(건설국) ① 건설국에 건설관리과, 토목 과, <u>치수과</u> 및 공원녹지과를 둔다. ②~③(현행과 같음) ④ <u>치수과</u>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 1~6(현행과 같음) ⑤(현행과 같음)</p>

##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### 심 사 보 고 서

1996. 2. 6.

행정재무위원회

#### 1. 審查經過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6년 1월 24일 영등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1996년 1월 25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4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(1996년 2월 6일 상정의결)

#### 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총무국장 윤정중)

##### 가. 제안이유

-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급변하는 사회환경 변화와 다양한 주민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, 지방재정을 확충하여 주민복지를 증진하고,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등으로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구정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데 있음.

##### 나. 주요골자

- 국민운동지원과 + 생활체육과 → 사회진흥과
- 부과과 → 부과1과, 부과2과
- 국, 과 명칭변경 → 시민국(시민생활국), 민방위과(민방위재난관리과), 산업과(지역경제과), 환경과(환경관리과), 청소과(생활환경과), 하수과(치수과)
- 계 통폐합 및 신설 → 국제교류계, 재난관리계, 중소기업계, 세외수입계, 구정연구계, 노인복지계

### 3.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 (専門委員 허영훈)

현행 지방자치법 제102조를 보면 자치구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한 행정기구는 설치·운영에 있어서 그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행정기구의 설치 기준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10조에 의하면, 지방자치단체가 기구를 설치 또는 개편하고자 할 때에는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·독자성·계속성과 규모의 적정성 및 타기관과의 균형성을 고려하고 또한 주민편의와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과 기구의 능률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 영등포구의 행정기구를 개편하기 위한 동조례 개정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사회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주민복지증진 및 주민편의와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적절하고, 또한 관계법령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바,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됨.

### 4. 審查結果 : 원 안 의 결